



: 2019-12-0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노2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아라(기소), 송명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대화, 박소정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96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5.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1)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 (2)항 범죄사실)

사기죄에 관하여, ① 현물인력 자체인건비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물을 편취당한 바 없고, 그 밖에 직접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제1번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연구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에게 인건비도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위 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주) I 허위거래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

(3)항 범죄사실)

① B와 (주) I 사이의 계약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설계'가 핵심이고, '조립'은 결과적인 부분일 뿐 주요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I이 공병무인자동회수기를 설계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② 또한, B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시제품 2세트를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고, (주)I이 설계도를 제공하고, 부품가공을 발주하는 등 모든 시제품 제작준비를 마치고 나서 편의상 조립만 B에서 공동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 (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생략)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생략한 부분)와 같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이체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물인력인 H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급여가 월 166만 원인 것처럼 근로계약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월 연구비를 180만 원으로 산정하여 참여율 80%를 적용, 월 144만 원씩 5개월간 총 72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 (<http://cleco-cms.keiti.re.kr>)을 통해 제출한 다음, 마치 연구기간 중인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이체처리결과별 상세조회서 5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에서 720만 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0,9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되(제19조 제4항 본문),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제19조 제9항, 별표2의2 제1의 자항)하는 사실(증거기록 3,874쪽 이하), ② 사업단 유치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F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인 B가 맺은 사업단과제 1단계 협약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피고인 A)은 사업단장이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되(제3조 제2항),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사업단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제4조 제3항)하는 사실(증거기록 90쪽 이하),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는, 1차년도 정부출연금 4억 9,000만 원, 민간부담금 1억 6,400만 원, 2차년도 정부출연금 5억 원, 민간부담금 1억 6,700만 원, 3차년도 정부출연금 5억 7,000만 원, 민간부담금 1억 9,000만 원, 합계 정부출연금 15억 6,000만 원, 민간부담금 5억 2,100만 원으로 규정하는 사실(특히 증거기록 1,783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마치 민간부담금 8,09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한 이상 사기죄 및 보조금관



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80,900,000원에 관한 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신고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80,9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80,900,000원 상당의 현물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06 판결(축소사실인 사기 미수죄의 경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규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협약상 1단계 협약기간은 2016. 8. 1.부터 2019. 4. 30.까지(33개월)간이며 그 중 당해연도 협약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4. 30.까지(9개월)간이다. 1차 년도의 연구개발비는 654,000,000원인데, 그 중 490,000,000원(약 75%)은 정부출연금, 164,000,000원(약 25%)은 피고인이 분담하는 민간부담금이며, 피고인은 민간부담금 중 10%인 16,4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0%인 147,000,000원은 현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및 이후 협약기간 중 허위 내용이거나 혹은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위조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다)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는 피해자에게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17. 5. 급여지급내역과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금 제출하여 민간부담금 지출내역 등을 신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7면 이하 및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시로 현물부담 인건비 변경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음에도 당해연도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무렵 BD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진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이 불거졌으며 2017. 7. 무렵 환경부 등이 피고인의 연구비사용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12. 무렵 V, T 및 자신의 계좌로 미지급 급여를 이체하는 것처럼 입금하여 외관을 만든 후 그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무렵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오자 그 때 H, AB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그 이체증의 날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였다(그 내용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5와 같다). 협약상대방인 F사업단은 2017. 11.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약이 2017. 5. 1.자 기준 해약되었다고 통보하면서 향후 연구개발비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증거기록 제2352면 이하). 한편 피해자의 연구개발비 정산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고 피해자 측의 별도의 조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인이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Z의 각 경찰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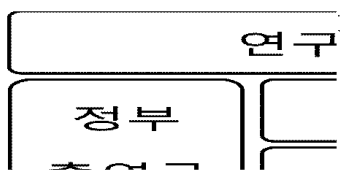
○ 이 사건 협약과 같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그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지침(이하 각 '운영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절차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¹⁾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에 있어 피고인이 부담하는 부분 중 90% 상당이 현물부담이므로 이 사건 협약상 중요한 의무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금부담금과 본질상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민간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협약상 피해자가 부담한 정부출연금의 제대로 쓰여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고 피해자는 공공기관으로서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적절하게 감시할 책임이 있는 점, 이에 운영규정과 이에 따른 지침은 이를 협약상대방의 자율에 맡기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도 하에 연구개발비에 관한 정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확정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정산절차를 완료하고 정산금을 확정하는 조치는 피고인의 현물출자 채무 이행 완료에 따른 재산상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이 문제되면서 피고



¹⁾ 연구개발비는 좌측 그림과 같이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별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별되는바(운영규정 제28조), 위 규정에 의할 때 연구개발비 중 기존에 현금으로 출연된 부분(즉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하며, 현물부담액의 경우는 부족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다(지침 제19조 참고).



인의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기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위조된 서류를 갖춰 피해자에게 신고한 시점에 이르러(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해연도가 끝난 뒤에 정산하려는 의도였다고 변소한 바 있으나, 오히려 이 사건이 문제되자 앞서 본바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 돌려받아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만들고 이체증을 변조하였고,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당시의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추인된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기미수죄로 처단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1번 A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연구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지침 또한 직접비 현물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참여기업 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참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제6조 제2항)이라고 정하며 지침 [별표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은 인건비에 관한 정산시 제출서류로서 '①참여연구원 현황표, ②급여명세서(월별), ③계좌이체증명'을 요구하여 위 현물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협약당사자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실제 지급된 인건비 외에 달리 이를 현물부담액을 확정할 기준 또한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자면 피고인이 정하는 대로 현물부담 이행금액이



정하여지는 셈이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는 B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함이 없이 월 800만 원의 인건비를 현물부담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위 돈을 현물부담액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해자는 경제적 타산에 충실한 사기업과는 달리 협약상 의무의 객관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 역시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대방으로서 응당 이에 따르는 의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B와의 내부적 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록 사기미수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주) I 허위거래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 (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제품 대금 외에 설계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시제품 제작 대금을 청구한 부분이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주)I이 공병무인자동회수기를 설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2)항 중 원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내지 제4행을 "서 5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물에서 720만원을 이행한 것으로 정산 받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부터 2017.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00,000원 상당의 현물부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산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로, 원심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 각 항의 "공제받아 편취" 부분을 "정산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류 위·변조와 페이퍼컴퍼니 및 허위계약서까지 동원하여 보조금을 수급받고 현물부담의무를 면하려고 하였다. 국가보조금이 엉뚱하게 쓰이게 되어 국가적 손해로 귀착됨은 물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적극적 범행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체 피해 회복한 바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 2019-12-03

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사기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거나 보조금관리
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선의종 _____

 판사 조정민 _____

 판사 이승원 _____



<별지>

관련규정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17.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기술산업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8조(민간부담금 형태) ① 민간부담금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중 제27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직접경비 중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제31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자료를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액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제24조제2항제11호에 따라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금액
 -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 및 제30조제7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발생이자 등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과 제30조제7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발생이자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 7. "정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



생이자와 장관,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감사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이하 "부당 집행 금액")의 합을 말한다.

10.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의 비용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비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운영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계좌에 예치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과세별로 출납상황 및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치운동증서(통장),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편철하여 그 표지에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한다.

2.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 전자 증빙으로 집행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증빙서류 원본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집행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125mm×10mm<중고덕 10호> 혹은 100mm×20mm <중고덕 16호>)을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견품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 중 백만원 이상의 단일구입품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작·배포한 라벨(참고서식 11.)을 부착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과세대상인 연구기관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



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이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는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 ④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내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최종 반영된 내역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별표 1]의 정산기준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부당 집행 금액을 확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세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당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2.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5백만원 이하로 계상하여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제16조(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실시한 정산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금 중 제19조의 회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관리계좌에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반납 대상 정산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에게 지급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참고서식 4)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



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산금의 회수) ①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다음연도 협약체결의 지연으로 인한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다음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행위로 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가 환경부장관이 연구개발비의 규모조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확정시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하고, 이미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당해연도 사용잔액이나 사업비의 이자로서 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규정 제3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 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산결과 통보시 해당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반납 또는 회수금액 범위) ① 정산금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이자 산입금액 제외)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이자 산입금액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민간의 실제 현물 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족금액 전체를 현금으로 회수한다.



: 2019-12-03

범죄일람표

연번	대상	편취 방법	편취금액	비고
1	A	실제로는 2016. 8.부터 2017. 4.까지 근로소득금액 기준 월 90만원씩 총 810만원만 지급하였음에도 매달 720만원씩 9개월간 총 6,48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계약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피의자의 실제 급여는 마상, 급여를 월 800만원으로 산정, 참여율 90% 적용) 그 차액 총 5,670만원을 부풀려 공제받아 편취 (채불임금 지급명목으로 2017. 5. 12. 2,100만원, 2017. 5. 26. 1,2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계좌이체)	56,700,000원	허위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근로소득신고 (월90만원)
2	V	실제로는 2016. 8.부터 2017. 4.까지 월 227만원씩 총 2,043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월 280만원씩 9개월간 총 2,52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급여를 월 350만원으로 산정, 참여율 80%적용) 그 차액 총 477만원을 부풀려 공제받아 편취 (채불임금 지급 명목으로 2017. 5. 11. 250만원, 2017. 5. 24. 345만원 등 595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이체하고 2017. 5. 24. 피의자의 개인 AN조합 계좌로 345만원을 되돌려 받음)	4,770,000원	근로계약을 위조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근로소득신고 (월225만원)
3	T	실제로는 2016. 8.부터 2017. 4.까지 월 187만원씩 총 1,683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월 240만원씩 9개월간 총 2,16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급여를 월 300만원으로 산정, 참여율 80%적용) 그 차액 총 477만원을 부풀려 공제받아 편취 (채불임금 지급 명목으로 2017. 5. 11. 200만원, 5. 24. 366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이체하고, 피의자의 AN조합계좌로 566만원을 되돌려 받음)	4,770,000원	허위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근로소득신고 (152만원)
4	AE	실제로는 AE이 2016. 8. 12. 퇴사하여 국책연구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1,700,000원	허위 작성된 근로계



: 2019-12-03

		2016. 8. 월 17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급여를 월 220만원으로 산정, 참여율 80%) 민간부담금에서 170만원을 공제받아 편취		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근로소득신고 (140만원)
5	H	실제로는 H이 국책연구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부터 2016. 12. 까지 월 144만원씩 5개월간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위조(급여를 월 180만원으로 산정, 참여율 80%적용)하고, 금융기관 이체처리결과별 상세조회서 5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에서 720만원을 공제받아 편취 (피의자는 과제가 끝난 후 H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고, 이체증의 날짜는 과제기간으로 수정하여 증빙)	7,200,000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근로소득신고 (129만원)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5매 위조
6	AB	실제로는 AB이 국책연구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부터 2017. 4. 월까지 월 144만원씩 4개월간 총 576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위조(급여를 월 180만원으로 산정, 참여율 80%적용)하고, 금융기관 이체처리결과별 상세조회서 4매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담금에서 576만원을 공제받아 편취 (피의자는 과제가 끝난 후 AB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A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체증의 날짜는 과제기간으로 수정하여 증빙)	5,760,000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근로소득신고 (월175만원)
편취금액 합계			80,900,000원	